

meritz 메리츠화재

더케이원배상책임(보험대리점)(201 010-8934-7569
50566010002)

신성장영업부

신성장영업부

1566-7711

9322632026070110029811000-339957



경기 광명시 소하로 78, 7층 8층(소하동)

한마음실버케어

귀중

1 4 3 1 6



화재보험_일반물건

기본사항(실명확인필)

증권번호 11000-339957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명	한마음실버케어	증권번호	11000-339957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827-80-02007)	청약일자	2026년 06월 30일
보험기간	2026년 07월 01일 16:00 부터 2027년 07월 01일 16:00 까지		
납입주기	일시납	납입 보험료	KRW 681,200

소유자사항

소유자	한마음실버케어 (827-80-02007)	관계	본인
-----	--------------------------	----	----

보장사항

소재지 사항	14316 경기 광명시 소하로 78, 7층 및 8층(소하동, 신성프라자)	대표업종	노인복지시설(복지회관, 경로당 등)
보험가입금액	KRW 4,500,000,000	보험료	KRW 681,290
국비	지방비	개인부담	

순번	목적물구분	보험의 목적/구조(목적물설명)	수용장소	한중	보험가입금액
1	건물	1급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콘크리트외벽 지상 8층 지하 2층 중 7층		KRW	1,500,000,000
2	시설	1급 한마음실버케어 7층 내 시설 일체	1	KRW	300,000,000
3	집기/비품	1급 한마음실버케어 7층 내 비품/집기 일체	1	KRW	200,000,000
4	건물	1급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콘크리트외벽 지상 8층 지하 2층 중 8층		KRW	1,000,000,000
5	시설	1급 한마음실버케어 8층 내 시설 일체	4	KRW	300,000,000
6	집기/비품	1급 한마음실버케어 8층 내 비품/집기 일체	4	KRW	200,000,000

우리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발행처 신성장영업부

더케이원배상 192.168.45.227

발행일시 2026-07-01 18:10:39

발행번호 F2607015219

대표이사



일반_증권_2016-0001

순번	목적물구분	보험의 목적/구조(목적물설명)	수용장소	환종	보험가입금액
7	화재배상	1급		KRW	1,000,000,000
담보사항			적용목적물	담보별보험료	
화재위험			1,2,3,4,5,6	KRW	395,500
화재(대물)배상책임			7	KRW	8,290
구내폭발위험			1,2,3,4,5,6	KRW	17,500
재조달가액특약			1,2,3,4,5,6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1,2,3,4,5,6	KRW	51,500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1,2,3,4,5,6	KRW	208,500

보험조건

적용약관
화재보험보통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구내폭발위험 특별약관
재조달가액특별약관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기타사항

이 계약은 아래와 같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때에 지급보험금이 채권액이하일때에는 보험금 전액을 질권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보험금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권사항	질권자명	(주)하나은행전동지점	질권금액	KRW	2,456,400,000
	질권기간	2026/07/01 ~ 2027/07/01	질권설명		

※ 단, 질권설정 금액은 근질권 설정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본 증권에 명기된 재물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보장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우리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발행처 신성장영업부
발행번호 F2607015219
일반_증권_2016-0001

대표이사

 

보험증권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

>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다시 안내드리오니 다음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통신계약 : 녹취) 하지 않은 경우 보장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후 알릴의무	과거의 질병 및 치료사실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효력이 없으니 본인이 직접 기록하시기 바랍니다.(계약전/후 알릴의무, 사고발생의 통지 등 속지)
청약서부분(사본) 약관 및 증권 수령	청약서 부분과 약관은 꼭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내용 및 본인작성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을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내용 및 본인작성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수령 후 보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 소정의 영수증이 아닐 경우 보험료 납입여부를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자동이체의 경우 은행 통장의 이체내역을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 최고와 계약의 효력상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의 무효	-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분)를 전달받지 못하였을 때 - 계약 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전화대기, 지점방문에 대한 불편없이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meritzfire.com



통합
계약조회



내보험
약관찾기



보험증권
제발급



보험계약
즉시대출



보험금
청구



증명서
발급

친환경 녹색경영 e-알리미서비스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e-알리미 보관함을 통해 보험계약 및 대출관련
증권/약관, 안내문 등을 우편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 안전하다
- 2 편리하다
- 3 빠르다

안내문 분실우려, 개인정보노출 걱정도 없습니다.
증권/약관, 계약 안내문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상담 / 대출상담 / 사고접수

고객지원센터 1566-7711 | 사고접수센터 1566-4982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문의

- 메리츠화재 대표전화 : 1566-7711

● 보험관련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민원상담 : (02)6464-3522/3535

- 홈페이지 : www.meritzfire.com > 초기화면 > 민원상담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 메리츠화재 보험범죄신고센터

- 전화 : 02-3707-8521 / 팩스 : 02-3707-8522

● 불완전판매물, 보험계약유지를 등 상기 모집자에 대한 주요정보는 e-클린보험서비스 (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세
현금납부증

※ 본 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제한금금 청구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회사소정의 영수증(실시간 이체계약, 초회보험료 자동이체 계약 제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단 신성장영업부
지점 신성장영업부
취급자 더케이원배상책임(보험대리점)(20150566010002)/(010-8934-7569)

우회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대표이사